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20265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7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 (제출일)	심사경과
전원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	2213788	허종식의원	2025.10.29.	-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(2026.3.24.) 상정 후 제안 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 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	2213821	안도걸의원	2025.10.30.	-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(2026.04.01.) 상정, -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(2026.04.15.) 상정 -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(2026.04.22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나. 제43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
(2026. 4. 22.)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
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435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
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6. 5. 19.)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기사업법」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, 재생에너지공동접속 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(제3조).

법률 제 호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”를 “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,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원개발사업자) 전원개발 사업은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<u>발전사업 자·송전사업자</u> , 「방사성폐기 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 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자(이하 “전원개발사업자”라 한 다)가 시행한다.	제3조(전원개발사업자) ----- ----- ----- <u>발전사업</u> <u>자·송전사업자</u> , 같은 법 제7조 <u>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재생</u> <u>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